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5
----------	-----

제출년월일 : 2005. 4. 22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 1. 1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봉투사용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용봉투를 전용수거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른 배출방법의 변경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 사업장 변경(안 제2조제2호)
- 나.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삭제(안 제4조제1항)
- 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변경(안 제5조)
- 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종류 지정(안 제9조제1항)
- 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를 규격봉투 판매로 하던 것을 전표 및 납부필증 판매로 변경 및 삭제
(안 제11조제1항, 제3항 변경, 제11조제2항 삭제)
- 바.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준용규정 신설(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예산확보(금325,440천원-시비 250,330 구비 75,110)
- 다. 합 의 : 시 청소관리과-904(2005.1.26)호로 같음
- 라. 입법예고기간 : 2005. 4. 1 ~ 4. 21 ▷ 의견제출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규칙 별표4제3호의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호중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배출요령에 의거 별표1과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본문중 “동법시행령”을 “영”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를 “전용수거용기는 단독주택용(20세대미만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음식점용, 공동주택용으로 하고, 규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전표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공동주택이외의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의 규격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중 “법·영·규칙”을 “법·영·「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제1호가목중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납부필증을 미부착한 경우”로 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 6. 1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방 법
음식물류	- 식품 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류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행구고 물기를 짰 후 배출하여야 한다.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하여야 한다. - 채소 등의 뿌리·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이쭉시개,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p>배 출 기 준 (음식물류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아자 등의 딱딱한 껍질과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 찌꺼기 :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 “의무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규칙 별표4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 6. (생략) 	<p>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3. ~ 6. (현행과 같음)</p>
<p>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p> <p>①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등)</p> <p><삭 제></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u>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 2. <u>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 	<p>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u>배출 요령에 의거 별표1과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u> 2. <u>음식물류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u>
<p>제6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u>동법시행령</u>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규칙</u>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 4. (생략) 	<p>제6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법 등) ----- ----- - <u>영</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 ----- <u>「폐기물관리법</u> <u>시행규칙</u>, ----- 2.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p> <p>①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p> <p>②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고 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p> <p>①-----</p> <p>전용수거용기는 단독주택용(20세대미만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음식점용, 공동주택용으로 하고 규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p> <p>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③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배출용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의 가격으로 산정하여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전표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부과할 수 있다</p>	<p>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p> <p>①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삭제></p> <p>③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전표를 판매하여 부과할 수 있고,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의 규격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여 부과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p> <p>① (생략)</p> <p>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u>법·영·규칙</u>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u>지방세법</u>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법·영·「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u> ----- <u>「지방세법」</u>-----.</p>
<p><신설></p>	<p>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신설></p>	<p>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별표1] (현행)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

종 류	품 목	배 출 방 법
음식물류	- 식품 쓰레기 - 조리전·후 <u>음식물찌꺼기</u>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등은 행구어배출 - 비닐·병뚜껑·조개껍질·큰뼈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별표1] (개정)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방 법
음식물류	- 식품 쓰레기 - 조리전·후 <u>음식물류폐기물</u>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행구고 물기를 짰 후 배출하여야 한다.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하여야 한다. - 채소 등의 뿌라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이쭉시게,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p>배 출 기 준</p> <p>(음식물류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p>
		<p>-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아자 등의 딱딱한 껍질과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p> <p>-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p> <p>-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멧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p> <p>- 찌꺼기 :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p>

[별표2]

현행					개정안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생략) 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u>전용봉투</u> 또는 <u>전용수거 용기에 배출</u>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생략) 2~3 (생략)	5	10	20	폐기물 관리법	1. (현행과 같음) 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u>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납부필증을 미부착한 경우</u> 나.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5	10	20